

研究論文

난전(亂塵)의 통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 흥 기*

I. 서론	VI. 결론: 재정립되어야 할 난전의 개념
II. <난(亂)>이란 글자의 뜻	<참고문헌>
III. 난전의 두 가지 의미	<국문요약>
IV. 난전과 금난전 그리고 금난전권	
V. 난전(2)로 난전 개념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거와 그 문제점	

I. 서론

조선 후기의 경제사 또는 상업사 연구에서 <난전(亂塵)>은 거의 예외 없이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들 가운데 하나이다. 누구든 난전 현상을 도외시하고 1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서울에서 제기된 경제와 관련된 주요 문제를 올바로 다뤘다고 주장할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관한 연구는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인 듯하다.¹⁾ 난전과 관련된 연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난전의 개념이 명료하게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난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경제학 전공(hgpark@aks.ac.kr).

1) 이육, 「조선후기 한강변의 상품경제 발전과 상업정책의 변」, 『서울학연구』, 24권(2005), 32쪽.

오늘날 난전의 의미는 대체로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난전은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허가한 시전(市廛) 상인 이외의 상인이 하던 불법적인 가게이다. 그리고 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용어인 <금난전권(禁難廛權)>은 조선 후기에 난전을 규제할 수 있도록 나라로부터 부여받은 시전의 특권으로 풀이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디지털화된 상태로 널리 보급하고 있는 『국역 조선왕조실록』에도 난전은 조선 조 때 전안(廛案)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허가된 상품 이외의 것을 몰래 팔던 가게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²⁾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직접 번역하여 펴내고 있는 『국역 비변사등록』에도 난전은 등록이 없거나 부정품을 파는 가게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³⁾ 관련 학계의 전공자들의 견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컨대, “본래 난전이라 함은 전안(상행위자의 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나 또 자기소관 이외의 (판매를 허가받지 않은) 상품을 서울 도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환언하면, 봉건적 어용상단(御用商團)으로서의 특권을 갖지 않은 자가 봉건적 상업구조를 문란(紊亂)하게 함을 뜻하는 것으로 그것을 금지 포착할 권한을 육의전 상단에 부여하였던 것이다.”⁴⁾ 금지 포착할 권한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금난전권을 가리킨다. 경제사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를 본받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난전이라 함은 말 그대로 시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하며, 전안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가 상행위를 하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⁵⁾

이런 몇 가지 예들로 미뤄 보아, 난전은 기존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어지럽히는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난전을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자들이 없지 않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면, “육의전과 제전(諸廛)에서…전문점의 허가를 얻어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각전의 취급물품을 사사로이 거래하는 것이 발견되면 전인(廛人)이 이를 형조나 한성부인 법사

2) 『영조실록』 영조 40년 8월 18일자,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註 16016 참조.

3) 국사편찬위원회, 『國譯 備邊司謄錄』(27)(2006), 142쪽.

4) 유원동, 『李朝後期 商工業史 研究』(한국연구원, 1969), 136~137쪽.

5) 김성천, 『朝鮮後期 亂廛의 展開過程에 關한 研究』,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6), 15쪽.

에 잡아들일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이를 난전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의 저자는 바로 이 문장의 끝에 “난전이란 조선시대 전안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허가된 상품 이외의 것을 몰래 파는 가게”라는 내용의 각주를 달아 놓았다.⁶⁾ 우리는 여기에서 그가 난전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지만 각주를 달아 놓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의식적으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몰래 파는 가게도 난전이고, 몰래 파는 자를 잡아들일 수 있는 특권도 난전인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오류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다고 여겨진다. 최근까지 이런 논문이 발표될 수 있다는 것은 관련 학계에 난전의 뜻이 아직도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더욱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난전은 위와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계속 혼용되어 왔다. 그뿐만 아니라, 난전이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에 주의가 요청된다는 지적도 일찍부터 있어 왔다.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인식하고 진지하게 제기한 학자는 김영호 교수이다. 하지만 그 역시 난전을, 아래에서 다시 논의되겠지만, 시전에 도전하여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는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위에서 살펴본 통념의 형성 및 고착에 일조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⁷⁾ 이런 한계는 난전이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지닌 개념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변명으로 극복될 수 없다.

이 글의 목적은 난전이라는 현상이 조선후기에 담당했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실증적 탐구보다는, 난전 개념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다. 즉, 난전은 원래부터 서로 다른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개념이며, 그 두 가지 의미는, <매매(賣買)>라는 용어를 <賣>나 <買> 어느 한 글자의 뜻으로 통일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의 난전으로 그 용법이 통일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난(亂)>이란 글자의 뜻부터 좀더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6) 연정열, 「萬機要覽에 관한 一研究: 財用篇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논문집』, 22권 2호(1998), 10쪽. 비슷한 예는 다른 논문에서도 발견된다. 최혜선, 「市塵과 亂塵과의 관계: 亂塵의 合法化 過程을 중심으로」, 『綠友研究論集』, 13권(1971), 4쪽.

7) 김영호, 「朝鮮後期에 있어서의 都市商業의 새로운 展開: 亂塵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2권(1968), 26-27쪽.

II. <난(亂)>이란 글자의 뜻

일찍이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올바른 독서 방법에 관하여 후학들이 본받아야 할 견해를 명료하게 표명한 바 있다. “내가 생각하건대, 독서하는 방법은 반드시 먼저 고훈을 밝혀야 한다. 고훈이라는 것은 글자의 뜻이다. 글자의 뜻이 통한 뒤에 구절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구절의 뜻이 통한 뒤에 문장을 분석할 수 있고, 문장의 뜻이 통한 뒤에야 그 편의 대의가 나타난다.”⁸⁾ 그리고 다산은 곧 이어, 글자의 뜻도 완전히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론을 먼저 제기하고 미묘한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선비들이 지닌 폐단을 질타하였다. 질타의 대상은 물론 안이하게 경학(經學)을 공부하는 선비들이었지만, 오늘날 과거의 문헌을 주된 사료로 삼아 경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경우에 따라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나무람이라고 생각된다.

<난전(亂塵)>의 올바른 의미는 두말할 나위 없이 <亂>자의 뜻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대만의 타이베이에서 1979년에 간행된 『중문대사전(中文大辭典)』에는 亂이 20가지의 상이한 뜻을 지닌 글자로 풀이되어 있다. 그리고 1999년 서울의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에서 펴낸 『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에는 그것이 지닌 의미가 22가지나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두 사전 모두 亂의 으뜸가는 뜻을 <다스리다(治也, 理也)>라는 의미로 풀이해 놓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우리가 흔히 염두에 두고 있는 <어지럽다 또는 어지럽히다(紊也)>와 <혼란하다 또는 혼란하게 하다(渾也, 混雜也)>라는 뜻이 올라 있다. 이것은 亂 자가,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건너짚고 있는 바와는 달리, 무엇을 무질서하게 만든다는 뜻보다 먼저이거나 아니면 그런 뜻과 동시에 혼란스러운 어떤 것들을 다스려 질서를 잡는다는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亂 자가 들어 있는 낱말들 가운데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한 예를 『중문대사전』에서 몇 가지 찾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난민(亂民): 1. 治理其民也(백성을 통치함)

8) 『與猶堂全書』, 제2집(經集) 제21권, 『尙書古訓序例』, 1쪽: “余惟 讀書之法 必先明話訓 話訓者 字義也 字義通而后句可解 句義通而后章可析 章義通而后篇之大義斯見.”

2. 紊亂秩序之人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들)

난신(亂臣): 1. 治理國政之臣也(나라를 잘 다스리는 신하)

2. 叛亂之臣也(반란을 일으킨 신하)

난정(亂政): 1. 猶言治政也(治政이라는 말과 같음)

2. 謂敗亂政治也(어지러운 정치를 이룸)

여기에서도 <다스리다>라는 의미의 亂이 포함된 낱말이 <어지럽다>라는 의미의 亂이 들어 있는 낱말보다 항상 먼저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낱말이 특정의 경우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낱말이 사용되고 있는 전후 문맥을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예컨대, 『논어(論語)』의 「태백(泰伯)」에 “武王曰 予有亂臣十人”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만이 따로 떼어져 놓여 있을 때, 여기에 쓰인 <亂臣>의 올바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묘방은 없다. 무왕이 말한 <난신>은 전후 문맥으로 보아 나라를 잘 다스리는 신하라는 뜻이 분명하다. 물론 <난신>이 반란을 일으킨 신하라는 하나의 뜻만을 지닌 낱말이라고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요령부득이 되기 십상이다. 그것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닌 낱말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가 전후 문맥을 잘못 짚는다면, 이 구절은 무왕이 의도했던 바와는 정반대의 뜻으로 잘못 이해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상당히 성가신 문제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위에 예로 든 것과 같은 부류의 낱말들을 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뜻만을 지닌 낱말로 새롭게 규정하려는 시도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런 시도는 언어의 자생적 속성 또는 역사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서, 문제의 해결보다는 과거의 기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의도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개연성이 더 높다.

지금까지 살펴본 亂이란 글자의 뜻과 그 용례를 바탕으로, 우리는 난전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난전(亂廩): 1. 시장의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행위

2. 시장의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난전이, 위에 든 예에서 엿볼 수 있듯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는 의미에 앞서 질서를 바로잡는 행위라는 의미로 쓰여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글에서는 편의상 첫 번째 의미의 난전을 난전(1) 그리고 두 번째 의미의 난전을 난전(2)로 구분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먼저 각각의 의미로 사용된 확실한 예를 과거의 문헌들 속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III. 난전의 두 가지 의미

난전이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인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보다 <신해통공(辛亥通共)>과 관련된 기록들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신해통공은 1791년(정조 15)에 당시 좌의정이었던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의 발의로 강력하게 시행되기 시작한 정부의 변화된 상업정책에 붙여진 명칭이다. 이 정책에 따라 육의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들은, 앞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난전(1)의 행사를 할 수 없게 됨과 동시에, 육의전이 취급하고 있는 것들 이외의 모든 상품 거래자들에게는 난전(2)가 허용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문헌과 이들이 어떻게 이해되고 또 번역되고 있는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난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쓰여 왔는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채제공의 발언 내용부터 검토해 보기로 하자.

1. 채제공의 통공화매(通共和賣) 발의

1791년 1월 25일 거행된 차대(次對)에서 채제공은 정조 임금께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若論都下民瘼 都庫爲最 我朝亂塵之法 專爲六塵之上應國役 使之專利也 近來游手無賴之輩 三三五五 自作塵號 凡係人生日用物種 無不各自主張 大以馬馱船載之產 小而頭戴手提之物 伏人要路 廉價勒買 而物主如或不聽 輒稱亂塵 結縛歐納於秋曹 京兆 故所持者 雖或落本 不得不垂涕泣賣去 於是乎各列其肆 以取倍

價 平民輩不買則已 若係不得不買者 則捨其塵 更不可從他求得 以故 其價日增 凡物之貴 較視於臣之年少時 不啻爲三五倍 近日則甚至蔬菜 甕器 亦有塵號 不得私自和賣 民生之食而無鹽 窮士之停廢祭先者 往往有之 凡此都庫 禁之則當止 而猶且噤默者 不過怵畏怨聲之歸於已耳…宜使平市署 考出數三十年以來零瑣新設之塵號 一併革罷 分付秋曹 京兆 六塵外以亂塵捉納者 非徒勿施 施以反坐 則商賈有和賣之利 民生無艱窘之患 其怨則臣可自當之矣

도성에 사는 백성의 고통으로 말한다면 도거리 장사가 가장 심합니다. 우리나라의 난전을 금하는 법은 오로지 육전이 위로 나라의 일에 수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빈둥거리며 노는 무뢰배들이 삼삼오오 때를 지어 스스로 가게 이름을 붙여 놓고 사람들의 일용품에 관계되는 것들을 제각기 멋대로 전부 주관을 합니다. 크게는 말이나 배에 실은 물건부터 작게는 머리에 이고 손에 든 물건까지 길목에서 사람을 기다렸다가 싼값으로 억지로 사는데, 만약 물건 주인이 듣지를 않으면 곧 난전이라 부르면서 결박하여 형조와 한성부에 잡아넣습니다. 이 때문에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본전도 되지 않는 값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에 제각기 가게를 벌려 놓고 배나 되는 값을 받는데, 평민들이 사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만약 부득이 사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처한 사람은 그 가게를 버리고서는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 값이 나날이 올라 물건값이 비싸기가 신이 젊었을 때에 비해 3배 또는 5배나 됩니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심지어 채소나 웅기까지도 가게 이름이 있어서 사사로이 서로 물건을 팔고 살 수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없거나 곤궁한 선비가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일까지 자주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도거리 장사를 금지한다면 그러한 폐단이 중지될 것이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단지 원성이 자신에게 돌아올까 겁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땅히 평시서로 하여금 20, 30년 사이에 새로 벌인 영세한 가게 이름을 조사해 내어 모조리 혁파하도록 하고, 형조와 한성부에 분부하여 육전 이외에 난전이라 하여 잡아오는 자들에게는 벌을 베풀지 말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반좌법(反坐法)을 적용하게 하시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매매하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 백성들도 곤궁한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 원망은 신이 스스로 감당하겠습니다.9)

우선 위의 번역문에서 눈에 띄는 몇 곳을 지적해 보면 첫째, 원문의 <亂塵之法>이란 말이 “난전을 금하는 법”으로 옮겨져 있다. 이것은 번역자가 채제공이 말한 난전을 난전(2)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둘째, <六塵外以亂塵捉納者 非徒勿施 施以反坐>라는 구절의 번역은 명료하지 않다. “육전 이외에 난전이라 하여 잡아오는 자들에게는 벌을 베풀지 말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반좌법을 적용하게 하시면”이라고 어색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난전이 난전(2)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은 <非徒勿施>가 “벌을 베풀지 말도록 할 뿐만 아니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데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했으니 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번역자의 생각이 이렇게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자가 이렇게 난전을 난전(2)로 파악한 결과 위에서는 <亂塵之法>을 “난전을 금하는 법”이라고 번역하며 본문에 없는 “금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이지 않을 수 없었고, 아래에서는 본문에 없는 “벌을”이라는 목적어 덧붙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발상을 전환하여 만약 우리가 채제공이 말한 난전을 난전(1)로 간주해 본다면, <六塵外以亂塵捉納者 非徒勿施 施以反坐>라는 구절은 “육전 이외에 난전(1)을 이유로 (잡상인 등을) 잡아들이는 자들은 그렇게 시행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좌법을 적용하게 하시면” 정도로 번역되고, <亂塵之法>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난전(2)를 금하는 법”이 아니라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난전(1)의 법”이 된다. 어떤 것이 본의에 더 충실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판단은 잠시 보류하고, 난전에 관하여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참조해 보기로 하자.

2. 난전의 첫째 의미: 난전(1)

『만기요람』은 1808년(순조 8)에 서영보(徐榮輔)와 심상규(沈象奎)가 왕명을 받아 찬진(撰進)한 책으로서, 신하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통치자인 국왕이 재용 및 군정(軍政)과 관련된 정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9) 『정조실록』, 정조 15년 1월 25일자;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備邊司謄錄』, 제178책 정조15년 辛亥 정월 28일자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책이다. 국왕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책이 오류가 있을 수 없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여 만들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¹⁰⁾ 그리고 이것이 이 책에 설명되어 있는 난전의 의미가 조선시대에 난전이라는 말이 지녔던 첫째의 의미가 된다고 우리가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기요람』, 「재용편(財用編) 5」의 각전(各廩) 조에 난전의 의미가 간명하게 풀이되어 있다. 여기에서 난전은 체제공의 통공화매 발의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며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요람』은 우리가 위에서 보류해 두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관련된 부분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諸廩既有分役 且是都民恒業之所係 故各廩物種之非廩人 而私自買賣者 許令廩人捉納法司 謂之亂廩 正宗辛亥 蔡濟恭啓曰 近來遊手之輩 自作廩號 人生日用物種 無不都庫 凡物之貴 五倍於昔 請零瑣新設之廩號 一並革罷 六矣廩外 勿許亂廩

제전에는 이미 분역이 있고, 또 도민의 항업이 매였으므로 각전의 물종을 전인이 아니고서 사사로 매매하는 자는 전인이 법사에 잡아들일 것을 허하니, 이것을 난전이라 한다. 정종 신해에 체제공이 계품하기를, “근년에 놀고먹는 무리가 스스로 전호를 만들어 가지고 민생의 일용 물종을 모두 도거리하여 모든 물가가 전보다 5배나 등귀하니, 자질구레하게 새로 설치한 전호는 한결같이 모두 혁파하고 육주비전 이외는 난전을 허락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하였다.¹¹⁾

의심의 여지없이 여기에서 난전은 난전(1)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부연하자면, 여기에서의 난전은 육의전과 전안에 등록된 여타의 시전들에게 그

10)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하여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안악 군수 오명신의 별천(別薦) 중에 전부술(前副率) 이재형(李載亨)의 <亭>을 <行>으로 잘못 써 놓았는데, 임금께 아뢰는 막중한 문자를 이치림 살피지 못한 일이 있었으니 경책(警責)시키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안악 군수 오명신을 추고(推考)함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국역 비변사등록 27권』, 278쪽.

11)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만기요람 I』(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2), 책 뒤로부터 187쪽에 원문이 있고, 앞으로부터 493쪽에 번역문이 있다.

들이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각종 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질서한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게 정부가 허가해 준 권리의 일종이라고 풀이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만기요람』은 우리나라에서 난전이 난전(1)의 의미로도 쓰여 왔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든 이로부터 난전이란 용어가 항상 난전(1)의 의미로만 사용되어 왔다는 결론을 도출하려 한다면, 그것 역시 한쪽에 치우친 성급한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난전이 난전(2)의 의미로 사용된 예는 역시 채제공의 통공화매 발의를 그의 공적으로 칭송한 다산 정약용의 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3. 난전의 둘째 의미: 난전(2)

다산은 채제공의 사후 그의 사적(事績)을 기록한 「번옹유사(樊翁遺事)」란 글을 남겼다. 번옹은 바로 채제공을 가리킨다. 다산이 이 글을 언제 썼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채제공이 1799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본다면 대체로 『만기요람』이 집필되던 시기와 비슷한 때에 썼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그 글 가운데 우리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辛亥 公請罷市民都估之法 奏曰 國制許禁亂塵者 以六大塵 上應國役 故使之專利 而近來亡賴游食者 自作塵號 凡係民生日用之物 無不權利 有私賣凡民者 名曰亂塵 驅以納諸法司 繩以律 沒其貨 故遠方行賈 雖折其本 不得不賣之本塵 都下居民 雖倍其價 不得不買之本塵 商旅不通 物價刁踊 今人莫不知禁之爲便 而猶且嚙默者 畏其怨耳...請自今唯六大塵 許其都估 餘並通共買賣 上從之

신해년에 공은 시민(市民: 저자의 백성)이 도매[都估]장사하는 법을 과하기를 청하여, “국제(國制)에 난전을 금하는 것은, 육대전(六대전)이 위로 국역에 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익을 독차지하도록 한 것인데, 요즘은 의지할 데 없이 떠돌며 놀고먹는 자들이 스스로 전호를 지어 놓고, 민생의 모든 일상용품을 전매하여 이익을 독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이 매매하는 일반 백성들을 난전이라고 이름하여 그들을 몰아내어 법사에 잡아들인 다음 법률로 다스려 그 재화를 몰수합니다. 그러므로 원방의 행상들이 비록

그들의 원전이 밀지더라도 본전(本塵)에서 팔지 않을 수 없으며 서울에 사는 백성들도 비록 그 값이 두 배나 비싸지만 본전에서 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인들이 통하지 못하여 물가가 뛰어들므로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금함이 온당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그 원망이 두려워서입니다.…지금부터는 오로지 육대전에서만 도매장사를 허락하고 나머지는 다같이 매매하게 해야 합니다”하니 상께서 이것을 따랐다.¹²⁾

다산의 글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실록의 <我朝亂塵之法>이라는 표현이 <國制許禁亂塵者>로 바뀌어 있을 뿐 나머지 내용은 대체로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我朝亂塵之法>과 <國制許禁亂塵者>라는 구절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난전의 법” 곧 “난전을 허가한 국가의 법”이 “난전을 금하는 것을 허가한 국가의 법제”와 그 의미하는 바가 같기 위해서는 전자의 난전이 난전(1)이라면 후자의 그것은 난전(2)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에 앞뒤의 두 난전이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라면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산이 체제공의 발의에 언급된 난전을 시장의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체제공의 통공화매 발의를 중심으로 난전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만기요람』의 편찬자들이 체제공이 말한 난전을 난전(1)로 해석한 반면, 다산은 그것을 난전(2)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전자가 공적인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면, 후자는 사적인 견해의 표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쨌든 난전이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지닌 용어로 혼용되어 왔다는 점만큼은 부인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 하겠다. 따라서 누구든 난전을 오로지 난전(1)이나 또는, 오늘날 이미 고착되어 있는 학계와 사회의 통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오로지 난전(2)로만 알고 있는 경우, 과거의 기록을 잘못 이해할 소지가 없지 않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기로 하자.

12)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다산시문집 7』(술출판사, 1996), 책 뒤로부터 107쪽에 원문이 있고, 앞으로부터 258~259쪽에 번역문이 있다.

IV. 난전과 금난전 그리고 금난전권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난전은 난전(2)로 번역되고 있다. 난전(2)에 관한 주석만 있을 뿐, 난전(1)에 관한 것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록에 나오는 모든 난전이 한결같이 난전(2)의 뜻으로만 쓰였다면, 이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난전(2) 뿐만 아니라 난전(1)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난전이 난전(2)의 뜻으로만 번역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예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영조 40년(1764) 11월 5일자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원문과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輦過鍾街 召市民年老者 問禁亂塵便否 對曰 鄉商雖蒙實惠 塵人無以專利矣 上笑曰 同是我民 譬如飲食均飽好矣

여가가 종로를 지날 때에 연로한 시민을 불러 난전을 금하는 것이 편리한가의 여부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시골 장사꾼들은 비록 실질적인 혜택을 입고 있으나 난전을 하는 사람은 이익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다 같은 나의 백성이니, 비하자면 음식을 먹을 때 똑같이 배가 불러야 좋은 것이다” 하였다.¹³⁾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 난전은 난전(1)의 의미로 쓰였고, <금난전(禁亂塵)>은 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통념과는 달리 난전(1)을 금하는 것, 다시 말하여 시전들이 허가받은 시장의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를 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塵人無以專利矣>에서의 <塵人>이 <난전을 하는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것은 난전을 난전(1)로 보았을 때 옳은 번역이다. <전인>이 바로 난전(1)을 하는 사람이고, 국가에서 이들에게 난전(1)을 못하게 하니 당연히 이익을 독점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난전을 상식적으로 난전(2)로만 알고 있어서 번역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방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을 펼쳐 본다고 하더라도 요령부득이기는 마찬가지일 것으

13) 『영조실록』, 영조 40년 11월 5일자;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로 보인다. 거기에도 난전(1)이란 의미의 난전은 아예 올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 보기로 하자. 채제공의 건의로 통공이 실시되기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나서 도량형 및 물가 관리 부서인 평시서(平市署)의 관리가 <금난전>을 주제로 왕과 나눈 대화이다.

平市署提調金文淳曰 諸廛有設置 近數百年 根柢已固 上應國役者 今若痛禁亂廛 各自私賣 則諸廛凋弊 將與革罷無異 此誠爲難禁之端 教曰 大臣之奏 亦非爲諸廛亂廛 一竝痛禁 就其中最繁於日用者而言耳 更加商量 斯速釐弊 亂廛雖禁 私自都賈 勢所必有 更究方便之道 以存闊狹之路

평시서 제조 김문순이 아뢰기를, “여러 가지 점포들 가운데는 설치한 지 수백 년에 가까워 뿌리가 이미 단단해졌고 위로 국가의 수요에 응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만약 난전을 엄하게 금하여 제각기 매매를 하게 한다면, 여러 점포가 잔폐해져서 혁파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실로 금지하기 어려운 까닭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이 아뢴 것도 여러 가지 점포와 난전을 모두 철저히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일상생활에 가장 긴요한 물품을 취급하는 점포에 대해서 말한 것일 뿐이다. 다시 더 헤아려서 속히 이 폐단을 바로잡으라. 난전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도거리 장사를 하는 것은 형세상 반드시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다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 하였다.¹⁴⁾

원문에서 눈에 띄는 구절은 <今若痛禁亂廛 各自私賣>이다. 이것이 <지금 만약 난전을 엄하게 금하여 제각기 매매를 하게 한다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난전이 난전(1)일 때에 한하여 성립함을 쉽게 알 수 있고 또 이것이 옳다. 만약 여기에서의 난전이 난전(2)라면, 난전을 금한다는 것은 제각기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난전이 난전(2)의 의미로 쓰인 곳도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난전(2)보다는 난전(1)의 뜻으로 사용된 난전이기 때문에, 난전(2)의 의미로 쓰인 경우는 하나만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14) 『정조실록』, 정조 15년 2월 12일자,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亂塵禁法 雖不可全廢 而京兆至出菜蔬亂塵 徵贖狼藉 此實前所未有 當該堂上
宜加責罰 上批以竝令議施 京兆堂上 摘發推考

“난전의 금법을 비록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으나 경조에서 채소 난전까지 나
와 징속이 낭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실로 전에 없던 바이니, 해당 당사
관에게 마땅히 책벌을 더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의논하여 시행하
고 경조의 당사관을 적발하여 추고하라고 비답을 내렸다.¹⁵⁾

전후 문맥으로 보아 위와 같은 상소문을 임금에게 올린 신하는, 모든 상거래를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채소를 판매하는 잡상들까지 시에
서 나와 단속하면서 속전(贖錢)을 받아가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임을 비난하며, 그
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亂塵禁法 雖不可全廢>에
서의 난전은 난전(1)로 파악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난전(1)을 금하는 법을 전폐한다
는 것은 시전의 독점권을 다시 강화한다는 의미가 되어 상소문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난전은 난전(2)로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난전>이 난전(1)과 난전(2)라는 두 가지 상
반된 의미를 지닌 용어로 혼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의 문헌에 나와 있는 난전이라는 용어가 통념에 따라 무심코 난전(2)로만 해
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것은 <금난전>이라는 용어도, 위
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세심한 주의와 함께 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전후
문맥에 따라 난전(1) 또는 난전(2)를 금한다는 전혀 반대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난전(2)를 금할 수 있는 시전의 특권이라
는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는 <금난전권>이라는 용어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상거
래의 확대를 통하여 물가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시전의 특권을 제한
하려는 정부의 상업정책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난전과
관련된 용어들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로 해석되거나 사용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사
용되어 왔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5) 『경종실록』, 경종 1년 4월 17일자,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 난전(亂廛):** 1. 시장의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행위
 2. 시장의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금난전(禁亂廛):** 1. 시전이 지닌 난전(1)의 특권을 금지하려는 정부의 상업정책
 2. 난전(2)를 금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획득한 시전의 특권
- 금난전권(禁難廛權):** 1. 금난전(1)과 같은 의미
 2. 금난전(2)의 특권에 대한 학계의 통칭

난전이라는 용어를 이처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사용에 신중을 기했던 학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제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난전의 개념을 다뤄 온 방식은 대략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난전을 난전(1)로 이해한 경우이다. 김한주 교수가 전형적이다.¹⁶⁾ 둘째는 난전을 결과적으로 난전(2)로만 파악한 경우이다. 대부분의 경제사학자들이 여기에 속하지만, 강만길 교수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셋째는 난전과 금난전이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결국 그것을 난전(2)와 금난전(2)로 통일하여 논의를 전개한 경우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영호 교수가 여기에 속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은 결과적으로 난전과 관련된 사실의 절반 정도만 다룬 셈이다. 따라서 김영호 교수가 문제의 핵심에 가장 근접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영호 교수가 지니고 있는 결함은 그가 <亂>이란 글자의 뜻을 올바르게 밝혀내지 못한 데 있다. 김 교수는 그가 쓴 논문의 한 장을 할애하여 <난전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난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난전이란 문자 그대로 전 즉 시전을 어지럽히는 상행위이며 구체적으로는 시전의 전안물종을 침범하는 상업현상을 말한다.”¹⁸⁾ 인용문에 있는 ‘문자 그대로’라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16) 金漢周, 「李朝時代 商業과 手工業과의 關係」, 전석담(외), 『李朝社會經濟史』(노농사, 1946), 254~256쪽.

17) 강만길, 「朝鮮 後期 商業資本의 成長: 京市廛·松商 등의 都賈商業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권(1968), 81~92쪽; 강만길,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23~25쪽; 강만길, 『朝鮮時代 商工業史研究』(한길사, 1984), 245, 262쪽; 강만길, 『韓國近代史』(창작과 비평사, 1984), 83~87쪽.

18) 김영호, 앞의 논문, 26쪽. 아래에 나오는 이 논문과 관련된 인용문들도 출처가 같기 때문에 각주를 따로 달지 않았다.

그가 <亂>이란 글자를 오로지 무엇을 어지럽힌다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구든 <亂>을 <紊>의 의미로만 알고 있는 한, 다시 말하여 <亂>이 <治>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한, 그가 난전(1)과 금난전(1)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영호 교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가, 위에서 우리가 논의한 바 있는, 채제공이 말한 <亂塵之法>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기로 하자. “亂塵之法이란 모든 상행위 중에서 특정부분을 전이라 하고 그 밖의 상행위는 전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법이란 뜻이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역시 위에서 다뤘던 영조가 저자의 한 늙은 백성과 나눈 대화에 나오는 <禁亂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禁亂塵>이란 시전을 문란하게 하는 전을 금지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행위를 시전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 하여 이를 금압하는 법을 폐지한다는 것, 말하자면 난전을 허용하는 것을 뜻하며 그 편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김 교수의 선문답과 같은 난해한 설명에서, <亂>을 <紊>의 뜻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治>의 뜻으로 쓰였을 때 그 참된 의미를 갈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여기에서의 <禁亂塵>이란 금난전(1), 즉 시전이 지니고 있는 난전(1)의 특권을 정부가 금한다는 뜻이다”라고 풀이하면 대화의 내용이 명약관화해 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여, 영조가 말한 금난전은 오늘날 조선후기의 경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염두에 두고 있는 금난전(2)가 아니라 금난전(1)로서, 시전들이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난전(1)을 과도하게 시행한 결과 빚어진 폐단을 줄이기 위해 그들이 지닌 특권의 박탈을 목적으로 취해진 정부의 조치였던 것이다.

V. 난전(2)로 난전 개념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거와 그 문제점

이처럼 금난전(1)과 금난전(2)는 난전(1)과 난전(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반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난전이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고, 더욱이 난전을 난전(1)의 의미로 사용했던 학자

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난전(2)와 금난전(2)가 학계의 통념이 되다시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이유의 일단을 김영호 교수의 다음과 같은 <편의성 테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난전이란 용어는 정반대되는 두 개의 뜻으로 혼용되고 있으므로 사료를 처리할 때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난전 문제를 정리함에 있어서 앞의 두 가지 용례상의 난전은 금난전이라고 해석하고 뒤의 두 가지 용례상의 난전은 그대로 난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편리하다. 따라서 시전이 난전권을 가졌다고 할 것이 아니라 금난전권을 가졌다고 용법을 통일하는 것이 편리한 것이다.”¹⁹⁾ 이것은 편의성을 근거로 하여 난전(1)은 금난전으로 개칭하고, <난전>은 난전(2) 하나의 의미만을 지닌 개념으로 간주하자는 주장과 같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그것이 김 교수의 이 논문에 국한된 것일 때, 이 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난전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정보 정도는 독자들에게 제공하며 논의를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난전의 개념을 모든 경우에 항상 난전(2)로 해석하자는 주장이라면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고, 그러한 우려는 난전(1)의 개념을 거의 도외시하고 있는 오늘날 학계의 실정을 놓고 볼 때 현실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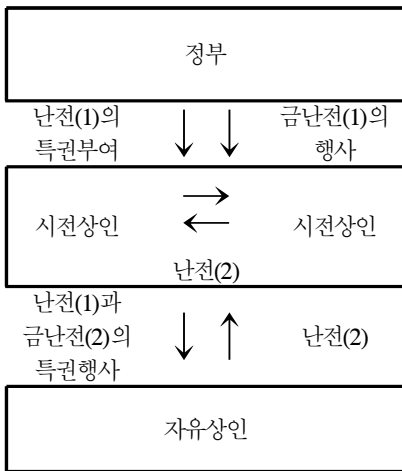
편의성은 그것으로 인해 사실(史實)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 한에서 추구될 만한 가치를 지닌다. 편의성 테제가 학계에 쉽게 받아들여지고 또 오늘날까지도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관련 학계의 거

19) 김영호, 앞의 논문, 27쪽. 김영호 교수의 이러한 <편의성 테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 논문의 초고에 대하여 한 익명의 논평자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다. “난전의 용례에 대해서는 기왕의 연구자들도 이미 충분히 주목해 온 문제로서, 본 연구에서 처음 제기된 문제는 아니다. 기왕의 연구자들 중 대부분은 난전이 용례상 두 가지 뜻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전의 상행위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상들의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로 난전을 표현하는 것이 난전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쉽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왕조실록이나 비변사등록의 번역자들은 이와 같은 연구 상황에 대해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난전이라는 용어를 난전(2)로만 일관되게 번역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난전의 상이한 용례에 관하여 학계에서 이미 거론되어 왔다는 사실은 이 글에서도 이미 몇 차례 강조된 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논문에서 다시 논의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다시 말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이 안이한 <편의성 테제>에 안주한 결과 내지는 무지의 탓으로 난전 개념의 해석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편찬자들과 사료의 번역자들마저 오류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려고 하는 필자의 뜻을, 이 논평자는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듯하다.

의 모든 학자들이 사전의 편찬자들이나 문헌 사료의 번역자들과 마찬가지로 <亂>자를 오로지 <紊>의 뜻으로만 이해하고 그것이 <治>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亂이紊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다면, 다시 말하여 난전이란 ‘문자 그대로’ 시전을 어지럽히는 상행위가 틀림없다면, 난전의 용법을 난전(2)로 통일하자는 주장은 편의성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문제는 편의성이라는 사소한 편익을 얻기 위해 사실의 왜곡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데 있다.

편의성 테제에 따라 난전(2)가 난전의 통념으로 굳어짐으로 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는 국가 통치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난전(1)이 의미의 대부분을 상실했다는 데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난전이라는 역사적 현상은 정부와 시전상인 그리고 사상(私商), 즉 자유상인들이라는 세 부류의 경제주체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의 종합으로 파악될 수 있다. 난전을 어지럽힌다는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 난전(2)로 인식하고 있는 학자들이 난전 현상을 관찰하는 경우 그들의 관심은 자유상인과 시전상인과의 관계와, 경우에 따라 시전상인 상호간의 관계에 집중될 개연성이 높다. 이것은 기존의 상거래 질서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도전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그림 1> 난전(1)과 난전(2) 그리고 금난전(1)과 금난전(2)의 상호관계



하지만 난전은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 난전(1)이기도 하며, 엄밀히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난전(2)는 난전(1)의 개념이 존재한 이후에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기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인지 판단의 기준이 먼저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난전(1)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김영호 교수의 다음과 같은 견해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난전은 대체로 인조 연간을 전후해서부터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된 것도 시전체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본억말(務本抑末) 사상에서 발상(發想)된 것으로 보인다.”²⁰⁾ 이런 점들로 미루어 우리는 난전 현상을 일으킨 핵심 주체는 자유상인이 아니라,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은 되도록 억제해야 국익이 증진될 수 있다는 무본억말의 사상을 국시로 삼아 나라를 통치하고자 했던 정부였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국시에 따른 질서정책 및 현실적 재정정책의 필요에 부응하여 시전상인들에게 난전(1)과 금난전(2)의 특권을 부여하여 기존의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물가안정이나 구황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금난전(1)의 행사를 통해 시전의 특권을 제한하고자 했던 것이다.²¹⁾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난전(2)의 의미로서의 난전이 사서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될 소지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조선후기의 경제사나 상업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난전의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는 “난전이란 문자 그대로 시전을 어지럽히는 상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난전이란 문자 그대로 상거래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논구한 학자가 없었다는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표준국어대사전』의 난전 항목의 해설과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에 대하여 이의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학자도 있었던 것 같지 않다. 학자들이 난전(1)과 난전(2)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여 해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편찬자들이나 사서의 번역자들이 난전을 계속 난전(2)의 뜻으로만 고집하고 있다면 그들의 이해 부족을 탓할 수 있겠지만, 학계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편의성 테제에 따라 난전(2)가 난전의 통

20) 김영호, 앞의 논문, 26쪽.

21) 이 논문의 초고에 대하여 또 다른 익명의 평가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후기 상업사에 관한 현재까지의 성과에 의하면, ‘난전’의 의미가 상반되는 두 가지로 경우에 따라 사용되고 있음이 밝혀져 있다. 기록상에서 확인되는 난전은 시전체제 중심에 도전하는 상업행위를 의미하면서, 한편으로 관권(官權)을 배경으로 하여 이러한 ‘난전을 금단하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평가자는 난전(2)와 난전(1) 그리고 금난전(2)의 의미는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식의 주장으로는 정부의 금난전(1)도 ‘난전을 금단하는 권리’를 의미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난전(1)이 바로 시전이 지닌 난전(1)의 권한을 금단하는 정부의 상업정책의 일환으로서, 배경이 된 관권이 아니라 관권 그 자체의 행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념으로 굳어질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VI. 결론: 재정립되어야 할 난전의 개념

난신(亂臣)이라는 말이 반란을 일으킨 신하란 뜻만이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신하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사전과 전문서적들이 난신을 반란을 일으킨 신하라고만 풀이하고 있다면, 위에서 예로 든 『논어』의 「태백」에 나와 있는 무왕의 말이나 또는 그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 난신이 포함된 기록을 읽은 독자가 그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된다. 이런 경우 사전과 전문서적들의 일방적 설명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 일방적 설명이 수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학계의 학자들이 먼저 그것이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낱말임을 사료에 나와 있는 구체적 용례를 들어 밝힐 필요가 있다. 난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의 문헌에 보이는 난전은 난전(1)이나 난전(2) 어느 하나의 뜻만으로 사용되어 오지 않았다. 더 이상 난전이 “문자 그대로’ 시전을 어지럽히는 상행위” 또는 “본래 난전이라 함은 ‘말 그대로’ 시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서술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든 난신을 ‘문자 그대로’ 반란을 일으킨 신하라고 정의하는 것과 같다. 다산이 말한 독서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즉 글자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의론을 전개하려고 할 때 학자들이 범하는 오류의 한 예를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난전은 난전(1)과 난전(2)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 개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난전은 난전(1)이나 난전(2) 가운데 어느 하나의 뜻만을 지닌 용어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의 난전 풀이부터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전의 국역에 종사하는 학자들도 난전 개념의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료에 보이는 난전은 쉽게 난전(1)이나 난전(2)로 판별되지 않는다. 확실한 경우 구별하여 번역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난전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임을 필요할 때마다 독자들에게 환기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크게 반성해야 할 사람들은 조선후기의 경제사를 통념에 젖어 연구하는 학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亂>은 문자 그대로 <紊>만이 아니라 <治>를 뜻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論語』; 『萬機要覽』; 『備邊司謄錄』; 『與猶堂全書』; 『朝鮮王朝實錄』.
 『中文大辭典』,台北: 중문대사전 편찬위원회, 197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1999.
 『漢韓大辭典』. 서울: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1999.

강만길, 「朝鮮 後期 商業資本의 成長: 京市塵·松商 등의 都賈商業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권, 1968, 79~107쪽.
 강만길,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강만길, 『朝鮮時代 商工業史研究』. 서울: 한길사, 1984.
 강만길, 『韓國近代史』.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4.
 김성천, 「朝鮮後期 亂塵의 展開過程에 關한 研究」.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김영호, 「朝鮮後期에 있어서의 都市商業의 새로운 展開: 亂塵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2권, 1968, 25~52쪽.
 김한주, 「李朝時代 商業과 手工業과의 關係」. 전석담(외), 『李朝社會經濟史』. 서울: 노농사, 1946, 252~267쪽.
 연정열, 「萬機要覽에 관한 一研究: 財用篇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논문집』 22권 2호, 1998, 1~16쪽.
 유원동, 『李朝後期 商工業史 研究』. 서울: 한국연구원, 1969.
 이욱, 「조선후기 한강변의 상품경제 발전과 상업정책의 변화」. 『서울학연구』 24권, 2005, 31~61쪽.
 최해선, 「市塵과 亂塵과의 關係: 亂塵의 合法化 過程을 중심으로」. 『綠友研究論集』 13권, 1971, 1~8쪽.

국 문 요 약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난전(亂塵)>을 시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행위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亂>이란 글자가 당연히 <紊>을 의미할 것이라는 그들의 속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亂>은 <紊>과 함께 <治>와 <理>라는 뜻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亂>의 뜻이 그렇다면, 난전도 시전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시전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정반대의 뜻을 지닌 용어로 동시에 사용되어 왔을 것이

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논문은 먼저 채제공의 신해통공 발의가 『만기요람』과 다산의 「번옹유사(樊翁遺事)」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통해 그러한 추측이 옳다는 것을 보이고, 다음으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속에서 상응하는 용례를 찾아 그러한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난전 항목을 비롯하여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사료의 번역에서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상업사에 관한 모든 연구에서 난전은 어느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닌 개념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투고일 : 2008. 4. 7. ● 수정일 : 1차 2008. 6. 10, 2차 2008. 9. 1. ● 게재확정일 : 2008. 11. 28.
- 주제어(keyword) : 난전(亂塵, nanjeon), 금난전(禁亂塵, geumnanjeon), 시전(市塵, sijeon), 조선후기 상업사(commercial history of late Joseon).